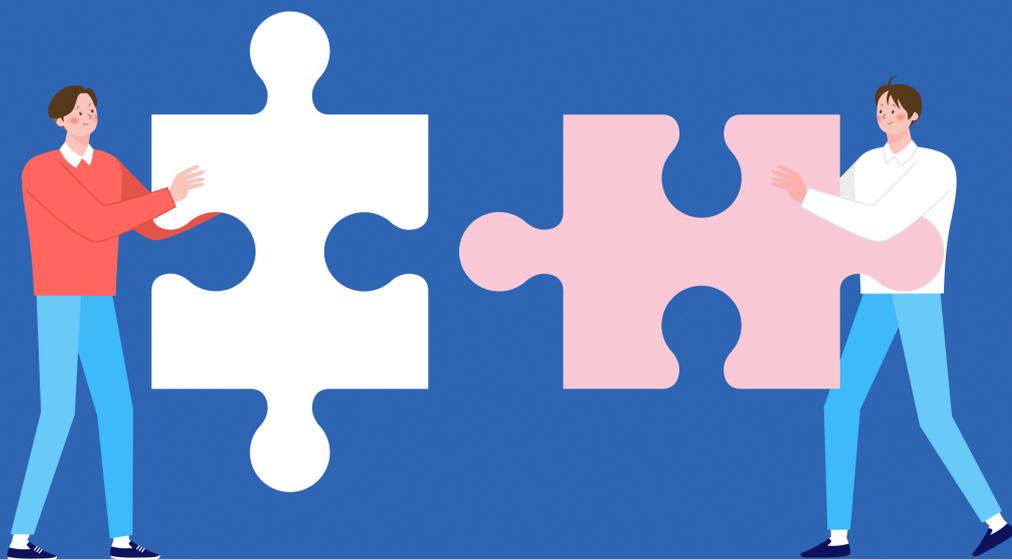


초상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뉴미디어 콘텐츠 가이드



초상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뉴미디어 콘텐츠 가이드

과거에는 뉴스 촬영할때 주변 행인들이 지나가더라도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리포터가 진행을 하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본인 얼굴이 방송에 송출되고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사회의 전반적인 법의식이 높아지고 개인의 기본권이 강조됨과 동시에 초상권이 중요한 권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뉴스 장면

초상권이란 사람, 그리고 그 신체에 드러나는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인에게 흔히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이와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미국등 서구국가에서 발달한 개념이며 기존 초상권 개념에 재산권적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강조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물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대62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얼굴이나 기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사전에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촬영하게 된 동기, 범위, 목적, 공표되는 범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요 초상권 침해 사례

1.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2.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意的 내용, 범위와 다른 경우
3. 명예훼손에 이용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적,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사전에 학생,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초상권 제공동의서를 가이드 후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초상권 제공의 목적, 촬영 후 활용 내용,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나 이를 재가공하거나 타 채널에 재업로드 시 초상권 제공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등 복무지침

교사 브이로그 촬영시 지켜야 할 사항
(교원의 유튜브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안내)

- 근무시간에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촬영,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 ① 교육적 취지 살린 콘텐츠 제작 : 학생들과 소통 창구, 교직 생활 정보공유,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등
 - ② 욕설비속어, 폭력적선정적 영상, 특정인물 비방, 정치 편향적 표현 금지
- 위법성 없고 절차 지켜야
 - ① 촬영하기 전 학교장 검칙 허가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 따르기
 - 구독자 1000명, 연간 영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시 검칙허가 대상
 - 학교장, 콘텐츠 내용과 성격 심사 → 지켜야 할 사항 준수하고 직무에 지정 없을 경우 검칙허가
 - 학교장, 매년 초에 검칙허가 받은 교사의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 점검
 - 점검 결과 검칙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검칙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② 학생 촬영 및 출연시 반드시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 구하기
 - ③ 사전 동의받았어도 필요시 모자이크 처리, 일정 기한 경과 후 동영상 비공개 전환 또는 공개 범위 제한 등 학생 개인신상 정보 적극 보호
 -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최종 동의 필요
 - ④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 수록 금지
 - ⑤ 수업 활용 등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 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2021년 선생님들의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 개시판에 오르는 등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영상중에 출연하게 되는 학생들의 초상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복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침 변경 사항>

항목	기존 지침	변경 지침
적용 대상	초·중등 교원	유·초·중등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검칙허가 대상	1)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2)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아프리카TV	1)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 (가)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 (나)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아프리카TV 2)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초상권은 개인 인격권일 뿐만아니라 최근 재산권과 결부되어 퍼블리시티권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나아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콘텐츠 제작 시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며 타인을 배려한다면 초상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활용 동의서

영상 촬영

- 영상 제작 목적 :
- 영상 제작자(소속/직급/성명) :
- 촬영 일시 :
- 촬영 장소 :
- 촬영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영상 활용

- 영상 활용 내용
-
-
-
- 유튜브 채널명 :

- 위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완성된 영상을 공익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2020. . .

학부모 이름 _____ (인)

학생 이름 _____ (인)